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안전·안부 확인, 건강관리, 생활교육, 병원·외출 동행, 간단한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등)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관련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나. 추진근거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3)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다. 위탁사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전반

1)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조사, 선정, 상담, 관리 등

2)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모집, 채용, 근로계약, 교육, 관리 등

3) 특화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라.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간 * 2024. 1. ~ 2025. 12.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재위탁 가능)

※ 수행기관 자격 : 관내 노인 돌봄 관련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설(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바. 수행기관 및 위탁사무 현황 * 2023년 기준

기관명	소재지	사 업 비(천원)	수행인력		관리인원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5개소	계	3,515,640	12명	161명	2,620명
강동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형곡동로3길 9, 2층	769,290	4명	32명	562명
구미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검성로 103-2	682,030	2명	32명	512명
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해평면 송곡2길 36	682,030	2명	32명	512명
성심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선산읍 단계서길 83-8	682,030	2명	32명	512명
은빛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송원서로8길 57, 3층	700,260	2명	33명	514명

사. 소요예산 : 연 3,515,640천원 정도(균 70%, 도 9%, 시 21%)

3. 부서의견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탁 추진이 적정함

나. 구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권역별 5개 기관에서 수행인력

173명(사회복지사 일반·중점 10명, 특화 2명, 생활지원사 161명)이 맞춤돌봄 대상자 2,620명(일반·중점 2,570명, 특화 50명)을 관리하고 있는 취약 노인·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기관 위탁(재지정), 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관리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07. 8.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9.>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 인력운영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내시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비를 산정 하였으며, 연 3,515,640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

나. 2차 년도부터 인건비, 물가 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3% 인상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소계(a)	3,515,640	3,621,109	3,729,742	3,841,634	3,956,883	18,665,00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균특)	2,460,948	2,534,776	2,610,819	2,689,144	2,769,818	13,065,505
도 비	316,408	325,900	335,677	245,747	356,119	1,579,851
시 비	738,284	760,433	783,246	806,743	830,946	3,919,652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3,515,640	3,621,109	3,729,742	3,741,634	3,956,883	18,565,008

5. 부대의견 : 국·도비 내시, 배정 인원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하경호(054-480-515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내 용	비 고
합 계	**3,515,640**		
인건비	3,291,182	- 사회복지사(경력 4년 이상) : 2,300,000원×10명×12월=276,000,000원 - 사회복지사(경력 2년 이상) : 2,190,000원×2명×12월=52,560,000원 - 생활지원사 : 1,254,450원×161명×12월=2,423,597,400원 - 퇴직적립금 : 230,185,490원(173명) - 사회보험료 : 293,228,700원(173명) - 제수당 : 15,610,700원(기관별 상이)	
기관 운영비	75,767	- 15,153,400원×5개소=75,767,000원 (수용비, 공공요금, 보험료, 차량비, 회의비, 여비 등) * 기관마다 운영비 산출내역 상이하여 평균금액으로 계산	
사업비	148,691	- 29,738,200원×5개소=148,691,000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문화활동, 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건강, 노래교실, 원예 등 프로그램 운영) * 기관마다 운영비 산출내역 상이하여 평균금액으로 계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산출내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편성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	과 장	권 혁 성
안	팀 장	강 영 도
자	담 당 자	하 경 호 (480-5155)